

국  
회  
의  
사  
당  
신  
축  
설  
계

용역계약에 대한 시정건의

금번 신축 계획 중인 국회 의사당 설계용역 계약체결에 있어서 전 문한 바에 의하면 현지 대학교수 명의로 재무부에 수의계약 등의 요 청을 하고 있다는 바 이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 소 개설등록을 한 건축사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현행법을 무시 하면서 까지 다음의 1, 2, 3항과 같이 법령에 의하여 업무행위가 금지 된 교육공무원(대학교수)을 대상으로 선정함은 법치국가의 입법부의 처사로는 지극히 이해하기 곤란한 사례로 생각하였으며 입법부 당국이 법령을 스스로 위반하면서 까지 무자격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이유를 이해하기 곤란하오니 건축사법 제19조,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자격자인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자)와 국회의사당 신축설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를 건의하오니 본협회의 정당한 요 구를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축사 사무소 무등록 업무의 금지

건축사법(법률 제1536호) 제25조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으로서 타인의 위탁에 응하여 보수를 받고 제19조 에 규정한 건축사의 업무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2. 벌 칙

건축사법 제29조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 록을 받지 아니하고 업으로서 건축사의 업무행위를 한자는 1년 이하 의 징역이나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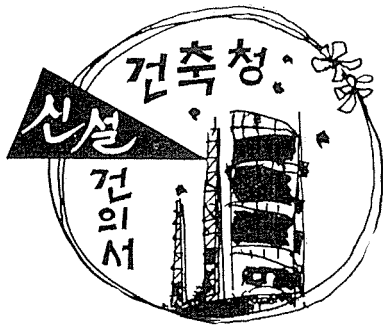
3. 교육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국가공무원법의 준용)에 의하여 공무원은 공 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 고 있음.

대한건축사협회

회	장	김	재	철
서울특별시	지부장	김	원	안
부산직할시	지부장	허	경	원
경기도	지부장	심	의	권
강원도	지부장	손	준	섭
충청북도	지부장	표	재	범
충청남도	지부장	양	세	환
전라북도	지부장	신	상	희
전라남도	지부장	정	육	진
경상북도	지부장	이	근	상
경상남도	지부장	백	남	진
제주도	지부장	강	기	정

# 건축청 신설에 대한 건의서



## 1. 취 지

자립경제 성장을 목표로 전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에 비례한 주택의 부족과 문화 발전,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증가일로에 있는 제반 건축물의 수요에 따라 정부 기구 내에 단일 건축행정기구의 설치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분야에 비교하여 극히 미소하게 분산되어 있는 건축행정기구를 통합함으로써 일관된 건축정책을 관장케 하여 건축행정운영의 강화와 원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2. 목 적

사회구조의 개혁에 따르는 생활양식의 변천으로 신건축기술의 등장, 새로운 건축자재의 출현, 도시계획에 수반하는 지역사회 조성문제, 건축관계 법령의 보강, 설비개선과 건축정책의 수립 등 기술적, 행정적인 제반 사항이 막대할 뿐 아니라 주택의 부족량도 130만 여호에 달하며 기타 건축물도 그 수가 증가일로에 있어 연간 건축 투자액이 무려 630억원(1967년도)에 달하고 있는 실정 등에 비추어 건축자산의 통괄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독립된 기구가 절실히 필요함에 그 목적이 있다.

## 3. 필요성 및 건의

건설 부문에서 막중한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건축업자가 건설부, 총무처 등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통일된 건축정책, 계획 및 예산정책에 허다한 차질을 초래케 하고 있음을 통찰하시고 차제에 건축기구의 일원화로 건축행정을 강력히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건축청을 신설하여 주시기를 거듭 건의하며 아울러 현행 제

제상으로는 아래와 같은 제반 이유로 업무수행상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가) 행정적인 정책수립의 반영이 어렵다.

나) 정책수립의 불가능으로 행정계획의 기본인 예산책정의 기회가 없다.

다) 정책수립의 불가능에 따른 계획과 집행의 미비로 도시 주택생활권의 난립, 단지조성의 혼잡성 및 도시계획에서의 구획정리와 교통로의 혼신, 국민 체육, 오락 시설의 미비, 산업시설 및 민영 건축물의 불량화를 지도 개선하기 위한 행정적 기능의 상실

## 4. 효 과

가) 하기와 여히 연간 건축 부문에 투자실적을 내고 있다.

(1) 1967년도 국민총생산액	1조 2,450억원
(2) 1967년도 건축사업투자액	630억원
(3) 대비율	5.2%

나) 제2차 5개년계획 중 약 5,000억원의 투자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기구의 일원화로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다) 제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건축공사에 참여할 총연인원 3,750만명과 인건비 약 1,500억원이 고용효과를 충족시켜 사회복지에 기여한다.

라) 연간 630억원(1967년도)의 건축투자금액 중 약 1/3이 되는 금액의 손실을 건축자재질의 개선과 신건축 기술활용 및 설비의 개선으로 절감할 수 있다.

마) 국내 건축 총자산비 약 3조의 건축물을 안전유지 관리하므로써 국가자산을 보호한다.

바) 25여만호에 약 500억원 해당되는 자산이 도시 및 농촌 불량주택의 정비로 손실의 미연방지

사) 세원(稅源)의 증가를 기한다.

아) 각종 재해로 인한 자산손실의 방지

자) 공공건물의 관리 소홀을 시정할 수 있다.

차) 신재료 및 신기술의 도입, 설비개선 등으로 경제적이고 안전한 건물을 얻을 수 있다.

카) 도시권의 계획수립에 건축법을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변경수정에 따른 예산의 절감을 기할 수 있다.

1969. 4. 21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김 재 철